

# 2023년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1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오영주,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15건(안전번호 제2023-55114호~5602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55114호~55119호(순번 1번~6번)는 웹하드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5120호~56028호(순번 7번~915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81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III.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8번은 권리자(실명 1인) 및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카페에 게시된 출판·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16건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출판 '♠♠♠ ♠♠♠ ♠' 1화~212화를 .txt파일로 제공 중임.

(순번 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방송) '♣♣♣ ♣♣ ♣♣♣ ♣♣♣♣ ♣♣ ♣♣' 1화를 제공 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6번, 웹하드 및 카페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6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7번 내지 91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

안임.

(드라마 '스위트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스위트홈'을 5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0. 12. 18.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예능 '헤미리에채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7번은 웹하드에서 예능 '헤미리에채과'를 1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3. 12. ~ 5. 28. 동안 ENA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임.

(영화 '던전 앤 드래곤:도적들의 명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16번 웹하드에서 영화 '던전 앤 드래곤:도적들의 명예'를 2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3. 29.에 극장개봉한 영화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7번부터 915번까지 총 1,812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순번 790번의 저작물 분류가 '자막'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순번 790번의 채증자료를 살펴보면, 웹하드에서 영화 '그렘린'의 다운로드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저작물 분류를 '영화'로 수정하도록 하겠음.

- A 위원: 영화 '그렘린'의 경우 1984년 작으로 고전 영화인데, 이렇게 오래된 영화도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할 경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다소 우려됨.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 권고의 취지에 맞는 모니터링 기준이 필요할 듯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균형을 맞춘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 내지 91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5114호~55119호(순번 1번~6번)에 대해 가결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5120호~56028호(순번 7번~915번)에 대해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19.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